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황철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5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황철규, 강석주, 김규남,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문성호,
송경택,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전병주,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4명)

1. 주문

-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방지와 조기 발견을 통한 중독 치료를 위하여 학교 정기 건강검진 시 마약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치료 연계 및 예방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학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2023년 한 해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약 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10대·20대 청년층이 1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약물 남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연령을 불문한 마약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6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충격적인 사례도 발생하였음.

- 심지어 성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를 앞세워 범죄에 악용하는 ‘10대 마약 총책’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마약 문제가 청소년층에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
- 청소년기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생에 걸친 중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적극 개입하여 마약 위험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장기적으로 누적될 우려가 큼.
-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는 마약류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약물 남용 실태를 파악할 공식적인 수단이 없으므로 현행 법제도와 학교 현장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이 마약에 손을 대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조기 발견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적발되더라도 체계적인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마약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 교육을 넘어 실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가능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시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강력한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학생들은 마약을 접하게 되는 순간, "학교에서 검사도 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경각심을 한 번 더 갖게 될 것임.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단순한 적발 목적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 검사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약물 남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발견 시 상담·치료 등 지원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4. 이송처

○ 국회, 교육부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그 중심에 교육과 보건복지의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 보호가 있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쉽게 접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복용하거나 유통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발견과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 건강검사의 항목에 마약류 관련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마약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 예방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해 학생의 마약 사용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상담, 치료 연계, 예방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마약 검사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갖게 되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은 단순히 학습의 장을 넘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만, 마약검사 시행에 따른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전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하며, 징계보다 교육과 치료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은 검사 시행과 후속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 도구 및 장비 지원, 전문 상담 인력 확보, 치료기관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취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를 보다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